



제422회국회(임시회)
제 1 차 국 방 위 원 회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졸업자를 임관 시
장기복무 장교에 포함〉

■ 부승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4865호)

2025. 2.

국 방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오명호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참고사항	2
IV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부승찬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4. 10. 23.
3. 회부연월일 : 2024. 10. 2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인사법」 제7조제1항제4호 단서에 따라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단기복무장교로 임용되어 6년간 의무복무를 하게 되어 있음.

그러나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생도들도 군사 교육 과정을 거쳐 장교로 임관됨에도 장기복무를 위해서 별도의 선발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은 기회손실이 커 복무의욕을 저하시키고, 타 육·해·공 사관학교와 비교할 때 불공정하여 우수인재 확보를 통한 강군 육성을 저해할 수 있음. 또한 직업군인을 목적으로 하는 생도들에게 국가의 지원으로 교육을 제공하면서도 이들을 단기복무장교로 규정하는 것은 국고의 낭비라고 할 수 있음.

따라서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임관자를 임관과 동시에 장기복무장교로 구분되도록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 제11조의 일부 개정을 하고자 함(제11조제1항).

Ⅲ.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부승찬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86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IV. 검토의견

☐ 개정안은 현 시행예정법에서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졸업자가 단기복무장교(6년 의무복무)로 임용되도록 한 규정을 개정하여, 임관과 동시에 장기복무 장교(10년 의무복무)로 임용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

현행	개정안
법률 제20012호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 제11조(의무복무) ① 제10조에 따라 장교로 임용된 사람은 「군인사법」 제7조제1항제4호 단서에 따라 6년간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 등 국방연구개발 관련 기관에서 의무복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무복무기간의 기산일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 ⑥ (생략)	법률 제20012호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 제11조(의무복무) ① ----- ----- -----제6조제2항제1호 및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10년간----- ----- ----- ----- ----- ----- -----. ② ~ ⑥ (현행과 같음)

☐ 시행 예정인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법률 제20012호)에서는 「군인사법」을 준용하여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졸업자의 의무복무기간을 6년(단기복무장교)으로 규정하고 있음.¹⁾

1) 「군인사법」(법률 제20018호) 제6조(복무의 구분)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는 국방 분야의 과학기술 연구·개발을 선도할 전문인력을 양성함으로써 국가안전보장 및 국방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될 기관임²⁾.

그러나,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졸업생은 육·해·공군사관학교 처럼 학부 과정에서 군사교육 과정을 이수함에도 불구하고, 장기복무를 희망할 경우 별도의 선발 절차를 거쳐야 하는 실정임.

이러한 구조로 인해 장기복무 선발 시점까지 경력 설계가 불확실해진다는 지적이 있으며, 과학·공학 분야의 우수 인재가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대신 다른 학교나 기관을 진로로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음.

또한 국가가 상당한 교육·훈련비용을 투입하고도 단기복무만으로 그치도록 하는 것은, 장기적 관점에서 국가 재정에 대한 투자 회수가 충분치 않다고 평가될 여지가 있음.

□ 이에 따라 개정안은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졸업자를 임관과 동시에 장기복무장교로 규정함으로써 복무 안정성을 제고하고, 국방 R&D 분야에서 장기적 안목으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③ 단기복무 장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육군3사관학교나 국군간호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

1의2.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

2. 사관후보생과정 출신 장교

3. 「병역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 출신 장교

3의2. 예비역 장교로서 전역 당시의 계급에 재임용된 중위 이상의 장교

4. 제2항의 장기복무 장교에 속하지 아니하는 장교

2)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를 지정·운영하여 국방 분야의 과학기술 연구·개발을 선도할 전문인력을 양성함으로써 국방첨단과학기술의 발전과 혁신을 통하여 국가안전보장 및 국방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여, 이스라엘의 탈피오프(Talpiot) 제도처럼 국가적 차원에서 첨단 국방기술 역량을 극대화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음.

□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보임.

첫째, 장기복무자가 국방 연구소에 배치되어, 평균 6년이 소요되는 국방 연구 프로젝트의 연속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방과학기술 개발 성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둘째, 장기간 근무한 인력이 숙련도를 축적하여 국가 차원의 국방 기술 자립과 첨단화 추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마지막으로 국가가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생도에게 투자한 교육·훈련 비용이 장기복무 과정을 통해 연구개발 성과로 사회에 환원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관련하여 방위사업청 산하 기관(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기술진흥연구소)에서도 연구사업의 연속성 강화 및 인력 부족 문제 해소라는 차원에서 개정안의 장기복무 전환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입장임.

□ 다만, 다음과 같은 점 역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첫째, 의무복무 기간이 6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날 경우 군 복무에 대한 부담이 증가해 지원율이 저하할 우려가 있음. 과학고 학생 101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의무복무 기간 축소를 선호

한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한 바 있어, 장기복무 의무화가 지원을 저하를 야기할 수 있음을 감안하여야 할 것임.

둘째, 군 조직 차원에서도 장기복무자 확대에 따라 계급 정원·특기 배정 등 인력운용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중·장기적으로 지휘·참모 요소와 연구·기술 요소가 균형 있게 운영될 수 있는 계획과 국방 기술 개발 장기 로드맵 등을 마련하여야 할 것임.

마지막으로, 시행예정법 제13조에 의하면 전역 후 취업·창업 지원사업 등을 규정했다는 점³⁾에서, 법 제정 당시에는 전문 직업 군인 양정보다는 단기복무 후 사회진출을 염두에 둔 기획 의도가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음.

□ 국방부는 유사 제도인 과학기술전문사관에 장기복무 지원자가 없는 점⁴⁾을 고려하면 의무복무기간에 대한 부담 증가로 개정안이 오히려 우수인력 확보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며, '26년 개교 이후 일정기간 운영 후 전원 장기복무 도입 여부를 검토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3)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 제13조(전역자에 대한 지원) ① 국가는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무복무 후 전역한 사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의 전역한 사람의 원활한 사회복귀와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면 같은 항에 따른 취업지원 외에 진로·직업상담, 취업알선, 채용박람회 개최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의 전역한 사람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창업상담, 창업교육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4) 2017년 제도 창설 이래 장기복무 지원자는 0명임

문 의 처
02)6788-5310